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14. 박홍배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4. 6.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 9.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4. 9.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전체회의(2024. 9. 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홍배의원)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

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미세먼지로서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면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①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공해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②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저공해운행지역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저공해운행지역

에서 운행 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박홍배 의원안 100만원, 임이자의원안 10만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

현행법 제29조[1]에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자동차와 배출가스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자동차 등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제재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2]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3]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유사한 노

---

1) **법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 4. 생략

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음.

[국내 운행제한 제도 운영 현황]

구분	녹색교통진흥지역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LEZ
근거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미세먼지법	대기관리권역법
목적	교통량 및 온실가스 감축	(계절관리제) 기저농도 저감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기관리권역 대기개선
대상 지역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 중구 16.7㎢)	- 계절관리제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비상저감조치 : 전국	- (서울) 전지역 - (인천) 일부(옹진군 제외) - (경기) 일부(28개시)
단속 지점	무인단속카메라 (48지점)	수도권 232지점 수도권 외 703지점	수도권 232지점
단속 시기	'19.12월~ *시범 실시('19.7~11)	(계절관리제) 12월~3월 (비상저감조치) 조치 발령시	서울('12~), 인천 ·경기('19~)
단속 시간	06시~21시 *토·일, 공휴일 시행	06시~21시 * 토·일, 공휴일 미시행	연중 상시(24시간)
적용 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차** *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 종합검사 부적합 * 대기관리권역외에서 60일 이상 권역에 진입하는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제외 차량	장애인·긴급차	- (공통) 장애인·긴급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의 제외차량 - (계절관리제) ・(수도권) 저감장치 부착,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中 생계형차량(기초,차상위,소상공인) ・(6대 특광역시) 저감장치 부착차량, 생계형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 (비상저감조치) 영업용 차량(수도권 및 제주 제외), 저공해조치신청 차량(수도권 및 전남 제외)	- 수도권 등록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경우 -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 6개월까지 유예
과태료	1일 10만원 ※ 서울시 과태료 부과	1일 1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 과태료 부과	월 1회 20만원 (1회 경고, 2회부터) * 총 10회 / 최대 200만원 ※ 등록 지자체 과태료 부과

자료: 환경부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2024. 1. 9.>

1.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4]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에서 정한 2030년 무공해자동차 450만대(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수소자동차와 같은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공해자동차만이 운행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저공해운행지역 관련 개정안 비교]

구분	박홍배의원안	임이자의원안
목적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지정 주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고려 사항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총량 등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5] 3.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인구 수, 교통량 및 지역적·산업적 특성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산업적 특성
운행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가능 차량	자동차 2.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따른 저공해자동차 2.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
지원 사항	1. 저공해운행지역에 주소지·사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우 저공해자동차 구매자금 우선지원 2. 어린이통학버스·화물운송사업차의 경유자동차 대체 목적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자금 우선지원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로, 영국 옥스퍼드에서는 2022년 무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무배출 지역(ZEZ: Zero-Emission Zone)을 9개 거리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로테르담, 중국 심천 등에서는 물류차량에 한정하여 무공해차만 운행 가능하도록 하는 물류차량 제한구역(ZEZ-F: ZEZ for freight)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박홍배의원안에서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내연기관 차량 대비 무공해차 보급률이 높지 아니하고, 현행 운영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 시의 과태료 수준을 고려할 때 위반 사항에 비하여 제재의 수준이 높아 보임.[6)]

5)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현행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7]에 따른 녹색교통진흥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8]에 따른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현행법[9]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LEZ:Low-Emission Zone)을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감안하여 10만원 이하(임이자의원안)로 통합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서울시·경기도에서는 경찰·소방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와 같이 저공해자동차로의 교체가 어렵고, 운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0]에서도 고농도 미세먼

---

6)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는 과태료 수준이 법 위반 사항에 비하여 과도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2조(과태료)**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제1호(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9) **법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

지 비상저감조치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실시할 때 「도로교통법」[11]에 따른 긴급자동차, 경찰·소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은 제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긴급차량에 대한 예외 근거를 마련(임이자의원안 제29조의2제2항)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시 교통흐름 저해 등 국민 불편을 고려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와 유사하게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해 도로 내 특정 운행구역 지정

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 4. (생 략)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생 략)
5.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11)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을 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12]에서도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 근거를 두고 있고, 개정안 제29조의2제6항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 시·도 경찰청장과의 사전 협의 근거를 해당 조항에 함께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13]

넷째, 박홍배의원안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저공해운행지역에 주소지·사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 용도로 사용되던 경유자동차를 대체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자[14]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그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변경·해제가 유동적일 수 있고, 자동차의 경우 그 운행범위가 저공해운행지역 내에만 한정되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2)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ㆍ검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13)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도 경찰청장과의 협의 또한 해당 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필요한 경우 각 시·도의 조례에 협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14) 참고로,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10)'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사용되던 기존의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통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자에게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50%, 2024년 예산 기준 1,300대 분량 편성)을 정액 지원하고 있음.

다만,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지원 근거(임이자의원안 제29조의2제4항)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6] 등에서도 특정 구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형동위원)

---

1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실증·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는 자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2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범도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략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사항

없음